

保健教育活動增進을 위한 保健關係 法規의 診斷 및 開發方向

洪 在 雄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目

- I. 保健教育活動의 目的과 重要性
- II. 保健教育活動의 實際
- III. 保健關係法規의 趨勢

次>

- IV. 우리 나라保健教育活動의 現況
- V. 保健教育活動增進을 위한 法規
附 錄

I. 保健教育活動의 目的과 重要性

保健教育活動은 個人的 健康한 生活과 集團의 健康을 保護·增進하는데 필요한 知識을 學習하여 正确한 健康生活態度를 가지고 바람직한 行動을 할 수 있게 하는 活動을 통일어 말한다. 그러나 保健教育活動의 궁극적인 目的是 바람직한 保健行爲에 있다. 즉 어떤 사람이 保健에 대한 깊은 知識과 正确한 態度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行動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意味가 없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어린이의豫防接種의 중요성과 그豫防機轉 및 效果를 잘 알고 있더라도 自身의 子女에게 適期에 필요한豫防接種을 하지 않았다면 그 깊은 知識과 態度는 無意味하며 이 사람에 대한 保健education活動은 그目的의達成에 失敗한 것이나 다름없다. 保健education活動의 최종적인 目標는 健康한 行態와 生活習性을 갖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保健education活動은 安靜되고 日常生活에 잘 適應할 수 있는 性格發達을 돋고 個人的 健康問題와 公衆保健의 問題에 대해서도 깊히 고려할 수 있게 하고 迷信이나 잘못된 健康觀을 제거하고 健康에 대한 觀心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自身의 健康保護를 위해 활용할 새로운 健康增進方法을 傳播함으로써 地域社會의 保健向上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保健education의 目標이다.

그리므로 保健education活動은 保健事業에 있어 基

本의이고 아주 重要한 要素로 취급되어 왔다. 어느 나라에서나 國民의 保健教育이 바람직한 保健事業의 受容과 採擇에 있어 가장 중요한 先行條件인 것으로 認識되고 있다. 保健education은 連續의 過程으로서 國民이 자신의 健康問題를 認識하고 찾아내는 것을 돋고 이런 問題에 대한 多樣한 對策에 대한 情報를 提供하고 모든 保健問題의豫防 및 解決을 위한 事業의 重要한 要素가 되고 있다. 특히 아무리 理論的으로 좋은 效果가 있고 이를 適用하는 技術이나 經濟的인 妥當性이 있는 保健事業이 있다 하더라도 社會·文化·慣習 및 心理的인 障碍가 있는 경우에는 實行不可能한 例가 있으므로 이를 實行可能하게 할 수 있는 方法은 이에 대한 保健education의 先行要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保健education의 重要性은 「2000년까지의 모든 人類의 健康」을 목표로 한 1次保健醫療(Primary health care)의 概念에서도 強調되고 있다. 즉 1次保健醫療에 必須의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중에 최우선적인 것으로서 그 地域社會에 널리 分布된 健康問題와 그豫防 및 管理方法에 대한 保健education을 들고 있으며 最短期間에 1次保健醫療를 接近시키기 위해서는 保健開發에 있어 地域社會와 個人的 自立性(Self-reliance)이 要求되며 이를 위해서는 1次保健醫療의 計劃·組織 및 管理에 全地域社會의 參與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地域社會의 參與는 그 地域의 實제적인 保健問題에 대하여 가장 適切한 방법으로 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保健education活動

을 통해서 가장 잘 誘導할 수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한편 國際保健教育聯盟(International Union for Health Education)은 經濟·社會開發에 있어서의 保健教育의 役割을 다음의 근거로 강조하고 있다. 첫째, 保健教育이 일반적인 健康水準의 向上과 產業場의 職業病 및 事故를 減少시킴으로써 勞動力의 生產性提高에 기여하여 經濟·社會發展의 中要한 要素가 된다는 點, 둘째, 保健教育을 잘 받은 사람들이 無知한 사람들보다 더 適切히 保健醫療서어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保健教育이 保健醫療서어비스의 效果를 提高하는데 寄與한다는 點, 세째로 保健教育은 단순히 疾病의豫防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人間의 健康에 영향을 미치는 生物學的, 心理的 및 社會的 要因等 모든 要因들의 均衡과 調和를 이루는데 관계된다는 點을 들고 있다. 그러한 사실로서 家庭이나 職場에서의 어려움 등 日常生活의 困境을 神經安靜劑의 服用이나 飲酒 등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直面한 狀況에 適應함으로써 克服하려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保健教育은 자신의 健康에 대한 責任感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點들로 볼 때 保健教育活動은 모든 保健事業의 基礎가 되며 가장 必須의 要素이다. 또한 그 效果面에서도 일단 成功하면 그 效果는 長期의이며 持續의인 것이다. 또한 健康問題의豫防, 治療 및 再活과 같은 消極의인 것이 아니고 健康의 增進을 목표로 한 積極의인 面도 包含하고 있다.

II. 保健教育活動의 實際

保健教育活動의 實際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問題에 대하여 概觀하는 것이 保健教育活動을 理解하기 위해 必要할 것이다.

1. 對象

保健教育活動의 對象은 學習能力이 있는 모든 사람이다. 물론 제일 중요한 대상은 學童이다. 따라서 學校保健教育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學校保健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保健教育이다. 이 時期에 가장 學習意慾과 能力이 왕성한 時期이므로 가장 좋은 效果와 長期의in 效果를 期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教育機會도 많다. 모든 學校內의 活動에 保健教育活動이 관련될 수 있다. 正規의 教科課程뿐 아니라 身體檢查 또는 給食과 관련하여 實제적인 保健教育이 가능하다.

이들 學生의에도 그 이후의 모든 地域社會住民이 保健教育活動의 對象이다. 이들에 대한 保健教育의 機會는 特別히 마련된 機會뿐만 아니라 모든 保健醫療서어비스와 併行하여 할 수 있다. 특히 健康上의 문제가 있어 保健醫療서어비스를 제공할 때가 保健教育의 效果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分娩時 또는 產褥期가 家族計劃啓蒙과 教育에 가장 效果의이라는 것이 연구결과로 밝혀져 있다.

2. 保健教育人力

흔히 保健教育活動은 保健教育專門家와 保健教育要員만의 專有物인 것처럼 誤解하는 수가 있으나 保健醫療서어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要員이 保健教育人力으로서 保健教育機能을 수행한다. 醫師, 看護員, 助產員, 藥師, 榮養士 등이 모두 훌륭한 保健教育人力이다. 또한 學生의 保健教育에 있어서는 父母와 教師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그 밖에도 學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保健教育活動을 하고 있다.

專門의in 保健教育要員은 다른 保健事業要員들의 保健教育活動에 協助함으로써 더 效果의in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保健要員의 訓練과 補修教育프로그램의 제작, 조직, 집행 및 평가를 도울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이들의 保健教育活動을 支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3. 保健教育方法

保健教育活動은 個人, 集團 또는 大衆을 相對로 그 方法도 多樣하다. 따라서 對象에 따라 또는 內容에 따라 신중하게 選擇해야 한다. 兒童들에 대한 保健教育에 있어서는 成人の 行動自體가 保健教育의 效果가 있으므로 특히 注意를 要한다. 學校內의 모든 活動에서 이러한 點에留意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4. 組織 및 協力體系

效果的인 保健教育活動을 위해서는 全體의 保健體系에 따라 組織化된 保健education活動이 필요하다. 아울러 各級組織間의 機能分擔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保健事業은 그 地域의 社會·經濟開發事業의 一環으로서 協力體系를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保健education活動도 地域社會開發事業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하며 保健education要員은 이들 事業의 從事者들과 機能的인 協力關係를樹立해야 한다. 특히 學校保健教育에 있어서는 保健要員과 學校教師와의 상호 긴밀한 協助가 必須의이다. 그 밖에도 地域社會의 自願團體 및 健康과 관련된 醫藥品 및 食品 등의 生產 및 流通組織과의 協力體系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 保健關係 法規의 趨勢

過去의 保健事業은 健康에 위협을 초래하는 疾病 특히 傳染病으로부터 個人 또는 地域社會를 보호하고자 政府의 權限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傳染性疾患의 感染源이 되는 사람, 動物 및 環境으로부터 健康人을 보호하는데 焦點이 있었다. 이러한 理由로 法律로서 病原巢인 患者 또는 保菌者の 자유로운 移動을 制限, 特定職業의 就業禁止, 健康人的豫防接種, 感染動物의 도살 등의 措置와 食品저장소의 消毒 및 食品流通의 禁止等이 行해졌다. 일종의 公安維持權의 行事が 主였고 다른 하나는 醫療人 또는 施設에 대한 免許와 許可制度를 들 수 있다. 주로 身體的疾患에 局限된 것이었다. 이러한 措置로 생긴 문제が 多數의 保健保護를 위해 個人的 權利를 制限하는데 대한 論難이다.

近來에는 保健活動의 焦點이 바뀌어 疾病의豫防으로부터 健康增進으로, 身體的健康의 위협으로부터 保健서비스의 近接性提高와 財政支援으로 되고 있다. 또한 食品의 汚染뿐만 아니라 그 첨가물과 基本構成成分 등에 대한 標準等에 대한 規制와 傳染性疾患의 傳播體로서의 製品에 대한 觀心뿐 아니라 癌 및 動脈硬化症 등

非傳染性疾患에 대한 危害可能性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밖에도 環境保護, 醫療서비스의 質管理 및 醫療資源의 財源과 規制等과 精神保健分野에 까지 法的措置의範圍가 擴大되고 있다.

그리나 保健과 관련된 法規를 分類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 部類로 나눌 수 있다.

첫째, 申告와 報告에 관한 法規로서 出生, 死亡等 生政動態의 申告와 傳染性疾患의 報告등에 관한 것.

둘째, 免許와 資格에 관한 法規로서 醫療人の 免許 또는 資格에 관한 것과 痘院 및 受容施設의 許可에 관한 것.

세째,豫防接種, 身體檢查, 就業증인 嫣娠婦의 보호, 性教育, 醫療費의 調達等의 保健事業活動과 이를 支援하는 制度에 관한 法規를 들 수 있다.

이들 외에도 教育, 社會福祉 및 勞動關係의 法規等이 保健에도 관連이 되는 것이 있다.

IV. 우리나라 保健education活動의 現況

우리나라의 保健education活動은 保健社會部保健局의 保健education課가 保健education活動의 主務部署이나 組織的인 保健education活動은 거의 全無한 상태이다. 保健要員의 訓練課程에 새로운 保健知識과 技術을 習得할 수 있는 機會를 제공하고 國民啓蒙 포스타, 傳單 및 小冊子 등을 製作·普及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러한 理由로는 첫째 保健education活動의 組織體系의 不備, 둘째 專門人力과豫算의不足, 세째 保健education의 重要性에 대한 認識不足, 네째 保健醫療事業중 治療置重性向 및 다섯째 政策意志의 貧困 등을 當事者들조차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政府의 保健education活動이 微弱한 데 비하여 民間機構인 各種協會를 통한 保健에 관련된 弘報 및 啓蒙教育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며 各種特定한 目標를 가진 保健事業이個別적으로 진행하는 弘報活動과 서서비스 提供時의 保健education活動으로 分散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學校保健事業은 文教部가 主管하고 있으

며 이 경우에도 檢診과 醫療서비스에 置重되고 있다. 保健教科目이 教科課程上으로 獨立教科目이 없이 體育教科目을 위시한 여러 教科目에 保健關係의 內容이 一部 삽입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體系的인 保健教育活動은 貧弱하지만 최근의 社會·經濟의 急速한 發展으로 인한 福祉慾求의 增大와 醫療保險의 擴大 및 メス·미디어(Mass media)의 적극적인 弘報로 國民의 健康에 대한 觀心과 意識은 많이 向上되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다음으로 法規上의 規定으로서 憲法 第34條에 宣言的인 意味의 保健權條項이 있고 「保健所法」第4條에 保健所業務의 하나로 保健思想의 啓蒙에 관한 事項을 管掌토록 規定되어 있다. 그러나 具體的인 保健教育活動과 관련된 法規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結核豫防法」第21條에 結核患者에 대한 家庭訪問指導에 관한 規定, 「醫療法」에 各種 醫療人의 使命으로 保健指導의 任務規定 및 「農漁村保健醫療를 위한 特別措置法施行令」第14條 2項에 保健診療員은 주민의 健康에 관한 業務를 담당하는 者에 대한 教育 및 指導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規定되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勤勞基準法」第69條에 使用者는 勤勞者를 採用한 때에는 그 勤勞者에 대하여 當該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安全과 保健을 위한 教育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비교적 구체적인 規定을 두고 있다.

아울러 「產業安全保健法」第4條에는 產業災害의豫防을 위한 事業主의 義務를 規定하고 第5條에는 勤勞者는 產業災害의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事項을 준수하여야 하며, 事業主 기타 관계인이 실시하는 產業災害의豫防에 관한 措置에 協力하여야 한다고 勤勞者의 義務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同法 第7條는 政府는 產業安全·保健에 관한 知識을 보급하고 安全·保健意識을 높이기 위하여 教育機關 및 專門研究機關을 통하여 產業安全·保健에 관한 教育과 弘報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同法 第9條에는 勞動部長官은 產業災害의 예방과 同豫防計劃의 효율적인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고 事業主·事業主團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事項을 廸告 또는 要請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事業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安全保健管理者를 두어야 하며 그의 業務중에 勤勞者의 安全·保健教育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同法 第12條) 이 業務中 保健에 관한 技術的인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保健管理者와 保健擔當者를 두고 그 資格, 職務·權限 등을 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 하였고(第14條) 同法 第23條에는 事業主는 勤勞者를 採用할 때와 作業內容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勤勞者에 대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業務와 관계되는 安全 또는 保健에 관한 教育을 실시하여야 하고, 有害 또는 危險한 作業에 勤勞者를 사용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安全·保健에 관한 特別教育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第24條에는 安全保健管理責任者, 保健管理者 및 保健擔當者는 勞動部長官이 실시하는 安全 또는 保健에 관한 教育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同法 第38條는 產業安全·保健教育施設을 勞動部長官이 設立·運營할 수 있고 非營利法人을 지정하여 이와 같은 施設을 設置·運營하게 할 수도 있도록 하고 同法 第39條는 事業主 등의 產業災害豫防을 위한 事業에 소요되는 경비 및 非營利法人의 產業災害豫防施設의 設置·運營에 소요되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政府의 豊算範圍안에서 補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2年에 公布된 「社會教育法」은 모든 國民에게 平生을 통한 社會教育의 機會를 부여하여 國民의 賚質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國家社會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 法으로서 學校教育을 제외하고 國民의 平生教育을 위한 모든 形態의 組織의in 教育活動을 社會education으로 定義하고 있다. 이 法에서 모든 國民은 社會education의 균등한 機會를 보장받고 社會education은 學習者的 自由로운 參與와 自發的in 學習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政治的·派黨的 기타 個人的 偏見의 宣傳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이 法에 의하여 除外된 者 이외의 누구든지 社會education을 실

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施行令에 社會教育의 領域으로서 保健 및 保健教育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一定한 時間이상 실시되는 社會教育課程에는 國民敎養에 諸요한 國史敎育, 國民倫理敎育, 環境敎育, 經濟敎育, 統一安保敎育 및 세마을敎育 등을 총학습시간의 1할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法 第7條 및 施行令 第3條).

이 社會敎育法에는 社會敎育을 위한 公共施設의 利用, 履修者の 學力 등 認定,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任務와 支援, 專門要員, 社會敎育施設과 學校 및 大衆媒體의 役割 等 廣範圍한 규정을 하고 있다(附錄 參照).

V. 保健敎育活動增進을 위한 法規

1. 새로운立法의 必要性

앞에서 現行 우리 나라의 保健敎育活動과 관련된 法規를 살펴 보았다. 그 중에서 1982年에 制定된 「社會敎育法」은 憲法에 규정된 平生敎育의 機會를 제공하기 위한立法으로서 이를 活用함으로써 保健敎育活動의增進이 可能할 것으로 判斷된다. 다만 이를 實行하는 政策的意志가 前提된다. 새로운立法에 의한 保健敎育活動의增進보다는 現行의 法律에서라도 政府의 強力한 支援意志와 個人, 團體 및 機關의 自發的努力과 긴밀한相互協調를 먼저 強調하고 싶다. 法規의 基本目的은 共同善의增進일 것이다. 그러나 그 方法에 있어서는 人間의 行爲를 規制하는 것으로 認識되기가 쉽다. 그런 方法으로서는 保健敎育活動의增進을 이루기 어렵고 그 目的과도 符合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個人, 團體 및 機關의 自發的인 保健敎育活動을 助長하는立法은 必要不可缺한 것은 아닐지라도 無妨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의 憲法에는 國民健康權의 確保를 宣言的으로만 규정하고 그 内容을 具體化한 法規는 없다. 또한 國家保健施策에 있어서도 國民保健意識水準의 向上을 통한 國民健康增進의 目標와 이를 위한 啓蒙敎育을 강조하였을 뿐 이에 필요한 組織이나 資源의 體系化도 未治하여 保健敎育活動에 대한 觀心도 不足하다.

따라서 國民保健增進을 위해 가장 基本的인 保健敎育活動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이를 體系化하며 政府의 保健敎育活動으로 未治한 부분을 個人, 團體 및 機關의 自發的인 分擔을 誘導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國民保健增進을 위한 保健事業의 效率性提高에 寄與할 수 있을 것이므로 极めて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한 수단으로서 新しい立法의 意義는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保健敎育活動은 政府의 여러 部處뿐 아니라 社會의 各種 團體 및 機關 그리고 個人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総體적으로 연결하고 같은 目標에 集中하기 위해서도 法制化를 통한 有機的인 相互協助를 이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開發方向

保健敎育의 궁극적인 목적은 個人의 自發的인 健康生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立法에 있어서도 個人에게 어떤 行爲를 強要하는 義務規定은 절대적으로 禁忌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社會構成員인 個人의 自發的인 健康生活을 促進하기 위한 政府, 團體 및 大衆媒體에 대해서는 그 本來의 目的이나 機能에 障碍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保健敎育活動을 積極的으로 推進할 수 있도록 義務化하는 것은 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히 民間團體나 機關에 대해서는 義務를 最少化하고 支援育成하는 方向으로 法制化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保健敎育活動을 學校保健敎育과 地域社會의 保健敎育活動으로 나누어 볼 때 이 兩分野의 긴밀한 協助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政府內의 擔當部處間의 協力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保社部를 비롯하여 文教部, 勞動部 및 文化公報部 등이 이에 관여될 것이다.

아울러 保健敎育活動에 參여할 人力의 養成機關은 이들 人力의 役割에 맞는 敎育內容을 갖출 수 있도록 敎育課程이 編成되어야 할 것이다.

各 分野別로 具體的인 開發方向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가. 學校保健敎育의 強化

學校保健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保健教育이며 學校內에서의 모든 活動이 學童의 學習機會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學校內에서의 모든 活動에서 保健教育的 影響을 重要視할 수 있도록 하여 教育機會로 활용한다.

① 學校教育에 있어서 教科課程上으로 保健科目을 獨立教科로 하는 경우와 體育教科를 비롯한 다른 教科와 混合된 경우의 保健education效果를 評價하여 效果의in 教科課程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② 어떤 形態의 教科課程에 있어서나 그 擔當教師의 保健education力量을 일정한 水準이상으로 保障할 수 있도록 教育大學 및 師範大學의 教育課程에 保健education專門家의 關與를 保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學校의 모든 教師가 그의 知識뿐아니라 行動自體가 學生에게 주는 保健education的 影響이 크기 때문이다.

③ 學童의 定期의in 身體檢查를 비롯하여 모든 保健活動을 保健education의 機會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質을 保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④ 學校給食 등 學校內에서의 活動에 있어 保健education의 影響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保健education의 機會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學校給食은 學生의 營養改善보다는 이를 實제적인 保健education(衛生 및 食習慣教育)의 機會로 삼을 수 있도록 그 質을 保障하여야 할 것이다. 紿食能力을 고려하여 每日 紿食이 아니더라도 保健education의in 紿食이 될 수 있도록 措置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學校給食은 學生에게 주는 惡影響을 고려하여 中斷할 수 있도록 엄격한 基準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現行 學校保健法上의 學校保健委員會의 義務의 召集 等 그 施行을 強化하고 各級 教育委員會(教育廳) 및 學校單位에도 教師 · 學父母 및 保健專門家로 구성된 保健委員會의 設置 · 運營을 法制화하여 效率의in 學校保健education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그 結果를 評價할 수 있는 法的 根據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地域社會 保健education活動의 促進

國民의 平生教育을 통한 國民의 資質向上을 목표로 한 現行 社會education法을 활용하여 社會education의 一環으로 保健education活動을 促進하고 支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포함되는 對象은 政府의 保健組織뿐아니라 모든 醫療機關, 保健關聯團體, 社會education機關, 地域社會組織, 企業體와 大衆媒體 및 個人 모두가 된다.

앞에서도 言及했지만 強制 또는 強要에 의한 義務化보다는 自發的in 活動에 대한 報償 및 支援方案이 바람직 할 것이다. 保健組織과 醫療機關의 모든 保健醫療서비스 機會를 保健education의 機會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뿐아니라 非專門團體와 機關의 活동에 있어서도 같은 機會로 활용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것이 目標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중요한 事項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① 保健醫療人力의 養成에 있어서 保健education的力量을 높일 수 있도록 教育 및 訓練課程에 대한 專門의in 諮問과 教育資料의 提供을 가능케 하는 法制와 基準을 協議를 통해 마련한다.

② 各種 保健醫療서비스를 保健education機會로 활용하기 위해 待期時間 및 서비스提供時의 充分한 時間의 確保를 위한 基準의 提示와 이에 대한 報償方案의 研究가 필요하다.

③ 새 마을教育을 비롯한 地域社會 및 企業體의 教育活動 중 一定한 比率을 保健education에 割愛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資料와 要員의 支援 및 經費의 稅制減免措置 등의 法制化는 保健education活動의 增進에 크게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④ 大衆媒體의 프로그램 특히 가장 많은 大衆에게 많은 時間을 點有하는 T.V. 媒體의 프로그램에 대한 保健education的 측면에서의 情報 management機能(Clearing function)의 法制化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이 保健과 관련된 많은 잘못된 情報가 實제로 公共媒體를 통해서도 提供되어 保健醫療行態를 誤導하고 醫療費의浪費까지도 초래하는 事例가 허다하다. 科學的 근거가 未洽한 情報까지도 公共大衆媒體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따라서 政府에 이를 管理할 수 있는 機構를 設립하거나 民間機構로서 이를 擔當케 하여 그 惡影響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⑤ 保健education活動을 위한 資料의 製作을 위한 專門機關의 設立을 통해 多樣한 教育資料를 製

作·配布함으로서 地域社會의 各種 團體와 企業體의 保健教育活動을 적극 支援할 수 있어야 한다.

⑥ 公益廣告의 一環으로 一定比率以上을 保健教育에 割愛하도록 法制化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醫藥品廣告에 保健education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⑦ 國民의 健康에 有害한 物資를 生產·普及하는 企業體는 반드시 그 有害可能性과 處置에 대한 情報提供센타의 運營에 필요한 經費를 負擔할 수 있도록 法制化한다. 이러한 情報의 신속한 제공을 위한 綜合情報센타를 政府 또는 民間機構로 設置할 수 있도록 法制化한다.

다. 政府의 關聯部處間의 協力體制

保健社會部를 주축으로 保健education活動에 필요한 政府組織의 強化와 關聯部處間의 協力體制를 效率的으로 하기 위한 政府組織法의 改正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地方自治制를 전제로 한 地方組織의 強化와 一貫性있는 體制의 整備와 機能分擔을 法制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生政統計 등 수집된 情報를 實際 事業의 計劃과 保健education活動 및 評價에 活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附 錄〉

●社會教育法 [1982. 12. 31] [法律 第3648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모든 國民에게 平生을 통한 社會教育의 機會를 부여하여 國民의 資質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國家社會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社會教育”이라 함은 다른 法律에 의한 學校教育을 제외하고 國民의 平生教育을 위한 모든 形態의 組織의in 教育活動을 말한다.
2. “社會教育團體”라 함은 社會education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法人과 法人 아닌 團體를 말한다.
3. “社會教育施設”이라 함은 社會education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

第3條 (適用範圍) 社會education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

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을 適用한다.

第4條 (機會均等 및 自律性의 보장) ① 모든 國民은 社會education의 機會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社會education은 學習者의 自由로운 參與와 自發的in 學習을 基礎로 이루어져야 한다.

第5條 (社會教育의 中立性) 社會education은 政治的·派黨的 기타 個人的 偏見의 宣傳을 위한 方便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第6條 (社會教育의 實施) 누구든지 이 法과 다른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會education을 實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禁治產者 또는 限定期產者
2. 破產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 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法院의 判決 또는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정지 또는 壞失된 者

第7條 (教育課程 등) ① 社會education은 教育의 課程·方法·時間 등에 관하여 이 法과 다른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實施하는 者가 정하되, 學習者的 필요와 實用性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一定한 時間 이상 實施되는 社會education課程에는 國民敎養에 필요한 一定한 教育內容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一定한 時間 이상 實施되는 社會education課程 및 이에 포함하여야 할 國民敎養에 필요한 教育內容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 (公共施設의 利用) ① 社會education實施者는 社會education을 위하여 그 본래의 用途에 支障이 없는 범위 안에서 公共施設을 利用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施設을 利用하고자 할 때에는 그管理者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한 그 利用을 許容하여야 한다.

第9條 (營利의 제한) 社會education은 營利를 目的으로 實施되어서는 아니된다.

第10條 (履修者의 學力 등 인정)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한 社會education課程을 履修한 경우에는 그에 相應한 社會의 待遇가 부여되어야 한다.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社會education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相應한 學校를 卒業한 者와 同等 이상의 學力이 있는 것

으로 인정할 수 있다.

第2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任務

第11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任務)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과 다른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會教育施設의 設置, 社會education專門要員의 養成, 教育資料의 開發, 經費의 補助 기타의 方法으로 모든 國民에게 平生을 통하여 社會education의 機會가 부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그 所管에 속하는 團體 또는 施設·事業場 등의 設置者에 대하여 社會education의 實施를 적극 勸獎하여야 한다.

第12條 (社會教育政策調整委員會의 設置) ①社會教育에 관한 政策을 審議·調整하기 위하여 文教部에 社會education政策調整委員會를 둔다.

②第1項의 社會education政策調整委員會의 組織·機能·運營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社會教育協議會) ①社會education의 效率적인 實施를 위한 協議·調整 기타 社會education實施者相互間의 協力增進을 위하여 서울特別市·直轄市 및 道의 教育委員會(이하 “市·道教育委員會”라 한다)에 社會education協議會를 둔다.

②第1項의 社會education協議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14條 (指導 및 支援) ①市·道教育委員會는 社會education團體 또는 社會education施設의 設置者의 要請이 있는 때에는 그 團體 또는 施設의 設置者의 社會education活動을 指導 또는 支援할 수 있다.

②市·道教育委員會는 社會education團體 또는 社會education施設의 設置者의 要請이 있는 때에는 그 團體 또는 施設에서 社會education活動에 종사하는 者의 資質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研修를 實施할 수 있다.

第15條 (經費補助) ①國家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社會education의 振興에 필요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education團體 또는 社會education施設의 設置者에 대하여豫算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第16條 (資料提出의 要請) 文教部長官 또는 市·道教育委員會는 社會education團體 또는 社會education施設의 設置者에 대하여 社會education에 관한 調査·研究 기타 計劃樹立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要請할 수 있다.

第3章 專門要員

第17條 (專門要員의 資格 등)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한 規模 이상의 社會education團體 또는 社會education施

設에는 社會education課程의 編成·進行과 教育效果의 分析·評價 등 社會education活動의企劃·分析 및 指導業務를 專擔하는 社會education專門要員(이하 “專門要員”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第1項의 规定에 의한 專門要員의 資格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 (缺格事由) 第6條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專門要員이 될 수 없다.

第19條 (身分保障) 專門要員의 身分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 (專門要員養成·研修機關의 設立認可) ①文教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門要員을 養成하거나 研修할 機關의 設立을 認可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專門要員을 養成·研修할 機關의 設立認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專門要員의 養成 또는 研修를 위하여 필요한 施設·設備를 갖추어야 한다.

③第2項의 规定에 의한 施設·設備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章 社會education施設

第21條 (社會education施設의 設置) ①社會education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目的을實現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設·設備를 갖추어야 한다.

②第1項에 의한 社會education施設의 設置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 市·道教育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③社會education施設의 設置者가 그 施設을 閉鎖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 市·道教育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22條 (私設講習所) 私人이 多數人에게 30日 이상 계속 또는 反復하여 社會education을 實施하는 施設로서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施設의 振興·육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1. 第21條의 规定에 의하여 設置된 社會education施設
2. 事業場 등의 施設로서 所屬職員의 研修를 위한 施設
3. 第26條의 规定에 의하여 學校에 附設한 施設

第23條 (圖書館 및 博物館) ①圖書館 및 博物館은 社會education施設로 한다.

②圖書館 및 博物館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5章 學校 및 大衆媒體와 社會教育

第24條 (學校와 社會教育) ①大學・師範大學・教育

大學 및 專門大學은 당해 大學의 特性에 맞는 社會教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學校를 제외한 學校는 당해 學校의 施設狀況을 考慮하여 適正한 方法으로 社會education에 기여하여야 한다.

第25條 (學校施設의 이용) 學校의 圖書館・博物館 기타 施設은 學校education에 支障이 없는 범위안에서 社會education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第26條 (社會教育施設의 附設) ①學校에 社會education事業을 위하여 필요한 施設을 附設할 수 있다.

②學校의 設置經營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附設하거나 閉鎖하고자 할 때에는 監督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27條 (大衆媒體와 社會教育) 新聞・放送・雜誌 등 大衆媒體를 經營하는 者는 당해 媒體의 運營에 支障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媒體를 통하여 社會education에

기여하여야 한다.

第6章 補 則

第28條 (是正命令) ①市・道教育委員會는 社會education에 관한 活動이 第5條・第7條 第2項 및 第9條의 規定에 違反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를 받은 者는 정당한 事由가 있는 한 指定된 期限내에 이를 履行하여야 한다.

第29條 (罰則) 第7條 第2項 및 第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第2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에 違反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0條 (施行令) 이 法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 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